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3. 8. 29 선고 2023가단103797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러스

담당변호사 박정현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민앤대교

담당변호사 조석만, 김표현

변 론 종 결 2023. 7. 11.

판 결 선 고 2023. 8. 29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의 2019. 9. 20.자 35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은 183,357,1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183,357,1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 중 40%는 원고가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체결한 2019. 9. 20.자 350,000,000원의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36,204,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28.부터 2022. 2. 14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2. 3. 11.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가단109972호로 2019. 2. 28.까지의 원단 등 미수대금 136,204,36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2. 11. 29. “피고는 원고에게 136,204,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28.부터 2022. 2. 14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”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나. 1) C의 소유인 서울 송파구 D, E호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9. 9. 20.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.

2) C의 배우자인 피고는 2019. 9. 20.경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50,000,000원, 임대차 기간 2019. 9. 20.부터 2021. 9. 20.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, 2021. 8. 9. 위 임대차보증금을 360,000,000원으로 증액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.

다. 1) 원고는 2021. 12. 30. C의 F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2021카단54201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2022. 1. 4. 인용결정을 받았다.

2) 위 가압류결정 및 진술최고서를 송달받은 F는 2022. 1. 26. 서울동부지방법원에 “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은 피고이고 C가 아니므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다”는 내용의 제3채무자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3. 1. 19.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.

라. 한편 피고는 2022. 3. 30.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22드단111403호로 이혼 등의 소를

제기하였는데, 위 이혼 등 사건에서 2022. 6. 22. “피고와 C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한다”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5호증, 을 제2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음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1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. 9. 20. C에 대하여 136,204,3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. 2. 28.부터 2022. 2. 14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2)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이 183,357,192원이 된다.

원금(원)	시작일	종료일	이율 (%)	기간식	기간 이자(원)	이자 누계(원)	원리금 합계(원)
136,204,362	2019.02.28.	2022.02.14.	6.00	(2 +	24,225,718	24,225,718	160,430,080

				352/365)			
136,204,362	2022.02.15.	2023.07.11.	12.00	(1 + 147/365)	22,927,112	47,152,830	183,357,192

나. 사해행위의 존재

1) 2019. 9. 20.자 증여계약 성립 여부

가)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의 단독소유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이 2019. 6. 18. F에게 825,000,000원에 매도된 사실, 위 매도대금 중 35,000,000원은 피고와 F 사이의 2019. 9. 2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정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인정되므로, 이는 실질적으로 C가 2019. 9. 20.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,000,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.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19. 9. 20. 현금 350,000,000원의 증여계약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

나)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C가 결혼할 당시 피고의 모친이 증여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소유명의만 C 앞으로 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을 피고로 한 것이므로,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, 을 제1, 2호증만으로는 앞서의 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C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어떠한 권리가 있다거나 증여가 아니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2) C의 채무초과 여부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

가) 갑 제1호증, 을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잔금 채권 외에는 약 5,700,000원 상당의 소나타 차량 1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C로 하여 2008. 3. 10. 채권최고액 108,000,000원, 2008. 6. 13. 채권최고액 60,000,000원, 2011. 3. 25. 채권최고액 180,000,000원, 2011. 3. 30. 채권최고액 96,000,000원으로 하는 각 주식회사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점,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도 140,794,262원[= 136,204,362원 + 136,204,362원 × 0.06 × 205/365(2019. 2. 28.부터 2019. 9. 20.까지)]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일응 C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약 830,700,000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는 반면 584,794,262원 상당의 소극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.

나)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'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'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

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,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,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(대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5다6808 판결,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).

다)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C가 피고에게 350,000,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.

라) 또한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,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, C는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자에게 변제한 나머지 대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정이 인정되는바, 위 인정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C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, C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.

다. 피고의 선의 항변

1) 피고는, 원고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C의 채무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

2)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,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).

3)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와 C 사이의 인적 관계, 이

사건 증여계약의 시기 및 내용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의 배우자로 C의 자산상태에 대하여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, C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 그 대금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점도 잘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해 C의 채무초과상태가 더욱 심화된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라.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

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사실심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183,357,1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.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의 목적물은 현금으로서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183,357,1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, 위 각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정덕기